

의안 번호	제3621호
----------	--------

##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5월 23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6월 2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6월 19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6월 19일

### 2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(법률 제20632호, 2024. 12. 31. 일부개정, 2025. 1. 1. 시행)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 연장(안 제2조)
-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# 5. 토론요지 : 생략

### 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### 7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9. 주문사항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2024년 12월 31일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2025년 상반기 ‘자동차세’ 과세 기준일인 6월이 도래한 이후에야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사례임. 해당 기간 내 여러 차례 임시회가 개최되었음에도 조례 개정이 지연된바, 세금 납부와 관련된 민감한 사항인 만큼 향후 상위법령 개정 시 변동 사항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하는 바임.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